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증인의 건

검 토 보 고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결산 개요	1
1. 세입 결산	1
2. 세출 결산	2
가. 총 괄	2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3
다. 전용 내역	4
라. 불용 내역	5
마. 이월 내역	5
3. 재무 결산	6
가. 재정상태표	6
나. 재정운영표	7
다. 순자산변동표	8

Ⅱ. 검토의견 9

1. 세입 : 위약금(57-572) 9

가. 결산 현황 9

나. 연례적 경호장비 납품 지연문제 개선 필요 9

2. 예비비(1) :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11

가. 결산 현황 11

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생략한 사업추진 지양 필요 13

3. 예비비(2) :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16

가. 결산 현황 16

나. 예비비 배정 및 과다 이월 부적절 17

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011-251) 21

가. 결산 현황 21

나. 회계연도 시작 전 용역계약 추진 부적절 21

5. 경호경비과학화(1231-501) 24

가. 결산 현황 24

나.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신속·면밀한 추진 필요 24

I. 결산 개요

1. 세입 결산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예산은 6,700만원이며, 5억 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함.

수납내역은 종로구 일대 유희토지 임대료 3억 9,600만원, 통신기지국 임대료 4,900만원, 경호장비 등의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위약금 1,300만원, 가족수당 환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100만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 수수료 등 면허료 및 수수료 600만원, 폐탄두·폐차 매각대 및 교육생 숙박비 등 기타잡수입 4,900만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B-A)	수 납 률 (B/A)
합 계	67	514	514	0	100
토지대여료	0	396	396	0	100
건물대여료	47	49	49	0	100
위약금	0	13	13	0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0	1	1	0	100
면허료 및 수수료	7	6	6	0	100
기타잡수입	13	49	49	0	10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세출 결산

가. 총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163억 2,2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1억 4,900만원 및 예비비 136억 7,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301억 4,200만원으로 이 중 1,198억 700만원(예산현액의 92.1%)을 집행하고 56억 7,000만원(예산현액의 4.4%)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 6,500만원(예산현액의 3.6%)을 불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본예산	추경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증감액	전용 증감액				
116,322	116,322	149	13,671	0	514 △514	130,142	119,807	5,670	4,665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나. 성질별 예산집행 현황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액 1,038억 2,100만원 중 인건비로 525억 1,800만원(총 집행액의 50.6%), 기본경비 115억 6,500만원(총 집행액의 11.1%), 주요사업비로 397억 3,800만원(총 집행액의 38.3%)을 집행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 위 사 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중) 이용(감)	전용(중) 전용(감)	예 산 현 액	집행액	다 연 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16,322	149	13,671	0	514 △514	130,142	119,807	5,670	4,665
□ 인 건 비	58,242	0	0	0	0	58,242	57,842	0	400
□ 기본경비	16,166	0	0	0	12 △12	16,166	15,254	0	912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319	0	0	0	4 △4	6,319	5,677	0	642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9,847	0	0	0	8 △8	9,847	9,577	0	270
□ 주요사업비	41,914	149	13,671	0	502 △502	55,734	46,711	5,670	3,353
-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16,911	0	1,100	0	0	18,011	17,678	0	333
- 경호장비시설개선	17,005	149	7,566	0	105 △105	24,720	17,172	5,502	2,046
- 경호업무정보화	4,432	0	0	0	250 △250	4,432	4,177	0	255
-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566	0	0	0	147 △147	2,566	2,177	168	221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0	0	5,005	0	0	5,005	4,507	0	498
- 경호경비과학화 (R&D)	1,000	0	0	0	0	1,000	1,000	0	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다. 전용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전용액은 5억 1,400만원임. 세부내역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5억 200만원, 국외업무여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800만원 및 직책수행경비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4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전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주요 전용사유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4	· 직책수행경비 재원 마련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8	· 국외업무여비 재원 마련
경호장비시설개선	105	·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재원 마련
경호업무정보화	250	·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재원 마련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147	·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일반연구비 재원 마련
합 계	514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라. 불용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액은 46억 6,500만원으로, 인건비 4억원, 기본경비 9억 1,200만원, 주요사업비 33억 5,300만원이 불용됨.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불용액	집 행 잔 액 내 역
합 계	4,665	-
□ 인 건 비	400	· 보수 등 집행잔액
□ 기본경비	912	
-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642	· 상용임금 등 집행잔액
-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270	·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집행잔액
□ 주요사업비	3,353	
-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333	·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 경호장비시설개선	2,046	· 공사비 등 집행잔액
- 경호업무전산화	255	·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
-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221	·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498	· 임차료 등 집행잔액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마. 이월 내역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56억 7,000만원으로, 공사일정과 납기가 지연됨에 따른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이 월 액	이 월 사 유
경호장비시설개선	5,502	· 공사일정 지연(4,542) 및 납품지연(959)
경호안전교육원 운영	168	· 공사일정 지연
합 계	5,67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재무 결산

가. 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 작성기준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대통령경호처 자산은 전기 대비 362억 600만원 증가한 7,701억 7,300만원으로 토지 222억 3,500만원 등 일반유형자산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부채는 전기 대비 7억 4,600만원 순증하였고, 이는 교육원운동자 공사 등 관련 미지급금 발생에 따른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A)	2021(B)	증 감	
			금액 (C=A-B)	비율 (C/B)
자산 합계	770,173	733,967	36,206	4.9 %
Ⅰ. 유동자산	126	25	101	404.0 %
Ⅱ. 투자자산	361	433	△72	△16.6 %
Ⅲ. 일반유형자산	766,583	729,763	36,820	5.0 %
Ⅳ. 무형자산	3,061	3,703	△642	△17.3 %
Ⅴ. 기타비유동자산	43	43	-	-
부채 합계	746	-	746	순증
Ⅰ. 유동부채	746	-	746	순증
Ⅱ. 장기충당부채	-	-	-	-
순자산	769,427	733,967	35,460	4.8 %

자료 : 대통령경호처

나. 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 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기 대비 174억 6,800만원 증가한 1,221억 3,600만원이고,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176억 5,400만원 증가한 1,199억원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I. 프로그램순원가	122,136	104,668	17,468	17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236	2,421	△1,185	△49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19,900	102,246	17,654	17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 - VI)	119,900	102,246	17,654	17

자료 : 대통령경호처

다.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기말 순자산은 전기 대비 354억 5,900만원 증가한 7,694억 2,600만원임. 이는 재정운영결과로 1,199억원 감소, 재원의 조달 및 이전으로 1,433억원 증가, 조정항목에서 120억 5,900만원 증가 등에 의한 것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A)	2022(B)	증 감	
			금액 (C=A-B)	비율(C/B)
I.기초순자산	733,967	571,721	162,246	28
II.재정운영결과	119,900	102,246	17,654	17
III.재원의조달및이전	143,300	265,111	△121,811	△46
IV.조정항목	12,059	△61,937	△73,996	△119
V.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69,426	733,967	35,459	5

자료 : 대통령경호처

Ⅱ. 검토의견

1. 세입 : 위약금(57-572)

가. 결산 현황

「위약금」은 지체상금 및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하는 항목으로, 2023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를 전부 수납하였음.

[2023회계연도 위약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0	0	0	0	13	13	0	0	0

나. 연례적 경호장비 납품 지연문제 개선 필요

납품기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대통령경호처는 세입예산으로 위약금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나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이후 매년 위약금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통령경호처 위약금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19년도	0	0	13	13	0	0
2020년도	0	0	10	10	0	0
2021년도	0	0	20	20	0	0
2022년도	0	0	6	6	0	0
2023년도	0	0	13	13	0	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총기 등 장비가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특수물품인 관계로 통관에 시일이 지체되는 측면이 있고, 특히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한 생산공장 셧다운 및 수출입 통제,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총기의 주요 생산국인 미국과 유럽의 총기생산 및 통관절차가 강화되어 납품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의 설명과 같이 납품지연은 대통령경호처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 또는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긴 하나, 경호장비에 대한 납품 지연은 차질 없는 경호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경호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생산·조달 업체의 납품능력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사 및 계약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품 지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예비비(1) :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가. 결산 현황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내외 정상 등에 대한 경호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예비비 50억 500만원이 배정되어 45억 700만원이 집행(예산현액 대비 90%)되고 4억 9,800만원(예산현액 대비 10%)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 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0	0	0	0	5,005	5,005	4,507	0	498	0

예비비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① 운영비 28억 2,300만원 중 24억 9,500만원을 집행, 3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고, ② 국내여비 1억 500만원 및 ③ 특수활동비 5억원은 전액 집행하였음.

또한, ④ 업무추진비 2억원 중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고, ⑤ 건설비는 총 3억 6,500만원 중 2억 3,700만원을 집행, 1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⑥ 유형자산 10억 1,300만원 중 9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세부 결산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배정 사유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① 운영비(210)	0	2,823	2,823	2,495	0	328	
- 일반수용비 (210-01)	0	584	584	558	0	26	경호작전 소모품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0	200	200	187	0	13	경호작전상황실 통신회선 비용
- 피복비(210-03)	0	104	104	104	0	0	경호근무자 피복
- 임차료(210-07)	0	1,416	1,416	1,280	0	137	경호시설장비 임차
- 유류비(210-08)	0	52	52	25	0	27	경호차량 유류비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0	447	447	341	0	105	경호시설장비 유지보수
- 일반용역비 (210-14)	0	20	20	0	0	20	경호업무 영상자료
② 여비(220)	0	105	105	105	0	0	
- 국내여비(220-01)	0	105	105	105	0	0	경호작전 출장여비
③ 특수활동비(230)	0	500	500	500	0	0	
- 특수활동비 (230-00)	0	500	500	500	0	0	경호활동비
④ 업무추진비(240)	0	200	200	199	0	1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0	200	200	199	0	1	경호업무협의
⑤ 건설비(420)	0	364	364	237	0	128	
- 실시설계비 (420-02)	0	17	17	0	0	17	경호작전 상황실 공사
- 공사비(420-03)	0	345	345	234	0	111	
- 시설부대비 (420-05)	0	2	2	2	0	0	
⑥ 유형자산(430)	0	1,013	1,013	971	0	42	
- 자산취득비 (430-01)	0	1,013	1,013	971	0	42	경호장비 도입
합 계	0	5,005	5,005	4,507	0	498	

자료 : 대통령경호처

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생략한 사업추진 지양 필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은 2023년 5월 29일 및 30일 양일간 진행된 제1차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에 따른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을 집행한 것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대통령경호처의 정상회의 경호업무를 위한 예비비 배정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건을 충족해 이루어져야 하나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

즉, 「국가재정법」 제22조¹⁾ 및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²⁾」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하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시급성), 확정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보충성) 등 불가피한 초과 지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2

【예비비 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처의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사업의 경우
 ① 정상회의 개최안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2년 9월경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점, ② 정상회의
 주관 부처인 외교부가 관련 예산 120억원을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경호처 역시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단계
 에서 증액 의견제시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예비비 배정 요건 중 예측
 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2023회계연도 외교부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준비기획단 운영	1,274	1,274	0	330	0	1,604	1,016	0	588
의제발굴 및 업무협의	350	350	0	0	0	350	221	0	129
정상회의 개최	10,376	10,376	0	△330	0	10,046	7,530	30	2,486
합 계	12,000	12,000	0	0	0	12,000	8,767	30	3,203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외교부로부터 정상회의 계획을 공유
 받지 못하여 당초 정부안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2022년 9월 경
 국무회의에서 정상회의 개최안이 심의·의결되긴 하였으나 당시
 전반적인 회의 일정 및 경호 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해당 예산을 예비비로 요구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둘째, 예비비를 요구함에 있어 소요 추계가 면밀하지 못하여 전액 불용되거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예산항목이 있는 바,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재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한 것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상회의 예비비 예산 50억 500만원 중 불용액이 4억 9,800만원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총 예산의 10%에 달하고, 일반용역비(210-14) 2,000만원 및 실시설계비(420-02) 1,7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으며, 공사비(420-03)의 경우 3억 4,5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집행률이 68%에 불과하였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대통령 국외 행사 주관 부처인 외교부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경호 관련 예산을 가급적 국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소요 추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예비비(2) :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가. 결산 현황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는 대통령 집무실 등 일부에만 설치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대통령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는 등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2개 세부사업에서 총 86억 6,6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어 24억 4,400만원이 집행(예산현액 대비 28.2%)되고, 54억 8,500만원이 이월(예산현액 대비 63.3%)되었으며 7억 3,700만원이 불용(예산현액 대비 8.5%)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에서 특수 활동비 1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②「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에서 공사비 51억 8,900만원 중 6,1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4,300만원을 이월 및 5억 8,500만원 불용하였으며 ③ 동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23억 7,700만원 중 12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4,200만원 이월 및 1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는 바, 세부 결산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경호보안시스템 강화(예비비) 비목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배정 사유
	예산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①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16,911	1,100	18,011	17,678	0	333	
- 특수활동비(230-00)	0	1,100	1,100	1,100	0	0	경호활동비
② 경호장비시설개선	17,005	7,566	24,720	17,172	5,502	2,046	
- 공사비(420-03)	0	5,189	5,189	61	4,543	585	경호시설 공사
- 자산취득비(430-01)	0	2,377	2,377	1,283	942	152	경호장비 도입
합 계(예비비)	0	8,666	8,666	2,444	5,485	737	

자료 : 대통령경호처

나. 예비비 배정 및 과다 이월 부적절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청사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등 주요 시설에만 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회의실 등 대통령실 주요 직위자 등이 활동하는 시설에도 도·감청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예비비를 배정받아 「경호보안시스템 강화」 사업을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이는 지난 2023년 4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이 제기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이나,³⁾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3) 동아일보, 「美 유출 문건에 한국 등 감청 현황...대통령실 “필요한 협의 예정”」, 2023. 4. 9.
한국일보, 「대통령실 “문건 상당수 위조”... 감청 여부엔 “美 조사 지켜봐야”」, 2023. 4. 11.

첫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비 배정은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예비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즉, 「국가재정법」 제22조4) 및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⁵⁾」에 따르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불가능하고(예측불가능성),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시급성), 확정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보충성) 등 불가피한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임.

그런데, ① 용산 청사 내 주요 시설에 대한 도·감청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은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이며,

이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경호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예산을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예비비 배정 요건 중 예측불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4)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5)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2

【예비비 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② 동 사업 예비비가 배정된 시점은 2023년 9월경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기 전이었고, 전체 예비비 중 63.3%에 해당하는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해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하지 못할 만큼 시급성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함.

둘째,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보안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비 집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한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⁶⁾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비비 이월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경호처가 예비비를 배정받은 특수활동비(230-00) 11억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공사비(420-03) 51억 8,900만원 중 45억 4,300만원, 자산취득비(430-01) 23억 7,700만원 중 9억 4,200만원 등 총 54억 8,500만원은 차년도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전체 예비비 86억 6,600만원의 63.3%에 달하는 규모임.

위와 같은 이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경호보안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해당 장소가 업무상 지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다는 점과 외산장비 납품이 지연됨에 따른 불가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6)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p.142

【예비비 예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호보안시스템 구축 시설의 지속적 사용과 외산장비 납품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예비비 배정 시점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 해당 연도에는 시급한 예산만 신청하고 나머지 예산 소요는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공사비(420-03)의 경우 51억 8,900만원 중 87.6%에 해당하는 45억 4,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보아 예비비를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축이 필요한 해당 장소가 업무상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경호업무 및 관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은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불가피하게 예비비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등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1011-251)

가. 결산 현황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는 대통령경호처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이며,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는 재무, 공보업무 등의 용역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중 2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고, 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3회계연도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본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 예산	추경(A)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9,847	9,847	0	630 △630	9,847	9,577	0	270	11,526
일반용역비	50	50	0	168	218	211	0	7	220

나. 회계연도 시작 전 용역계약 추진 부적절

대통령경호처는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비대상)에 편성된 일반 용역비를 통해 ‘재무결산 및 회계, 예산 업무지원을 위한 용역’에 1,9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023회계연도 시작 이전인 2022년 11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계약 기간	계약유형
재무결산 위탁용역	20	19.5	2022. 11. ~ 2023. 11.	수의

자료 : 대통령경호처

「국가재정법」 제3조⁷⁾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⁸⁾에 따라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재무결산’ 계약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른 국가기관의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연도 시작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파악됨.

-
- 7)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운송계약·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른 국가기관의 재무결산 위탁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계약명	계약기간	예산액
국회사무처	국회 소관 재무결산 작성 용역	2023. 2.~12.	20
대법원	2022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2023. 1.~9.	19
외교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자문용역	2023. 1.~12.	18.7
행정안전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용역	2023. 1.~5.	20
고용노동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회계지원	2023. 1.~4.	18
해양수산부	국가회계 재무결산	2023. 1.~12.	36
중소벤처기업부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위탁 용역	2023. 1.~12.	41

자료 : 각 부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 요구자료(II-1) 참조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재무결산’을 포함한 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경호경비과학화(1231-501)

가. 결산 현황

「경호경비과학화」는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에 근거하여 위험물 여부를 판독하는 인공지능(AI) X-Ray 적용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신규 편성된 R&D 사업으로, 2023년도의 경우 연구개발출연금(360-05) 명목으로 10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경호경비과학화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000	1,000	0	0	0	1,000	1,000	0	0	500

나.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신속·면밀한 추진 필요

「AI X-Ray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되어 2021년 특허⁹⁾를 등록한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의 AI를 이용한 위험물 검출 등 보안검색 업무 효율화에 대한 자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23년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부처 R&D 사업임.

9) 대통령경호처가 등록한 특허명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4색 X-ray 장비를 활용한 원소의 판별방법 :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밀도에 따라 X-ray 결과값 중 색상이 달라지는 원리를 보안검색 업무에 적용하는 기법
- ② 인공지능을 이용한 위험물 검출 시스템 및 방법 - 대통령경호처 특허 검색기법을 적용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동 R&D 사업은 기존의 X-Ray 검사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경호(보안검색)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로, ① 일반적 금지물품과 전략적 위험물품(재래식 무기, 액체 위험물 및 위장무기류, 급조폭발물) 등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②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검색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③ 이러한 AI 검색기술을 이용한 ‘보안검색업무 교육체계 정립’ 등 3개의 단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과제기획서상 사업개요]



자료 :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는 동 R&D 사업 1차년도 연구 달성정도를 ① 빅데이터 구축 분야 20%, ② AI 검색 프로그램 개발 분야 40%, ③ 보안검색 업무 교육체계 정립 분야 40%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경호처가 제출한 동 R&D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현재 보안검색업무는 정형적 형태를 가지지 않는 액체 위험물(강산류), 화학적 위험물, 생물학적 위험물 및 모양을 변형한 IED(급조폭발물)와 위장무기류 등 검색에 한계가 있어 다수의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검색대상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구성에 기반한 과학적 검색기법 및 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검색업무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검색프로그램의 보조를 받아 광범위한 위험물을 사전에 인지하여 국가 보안검색 업무가 질적으로 향상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가안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한편, 동 R&D 사업 구축을 위하여 당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7 비율로 분담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 연도별 AI X-Ray 개발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1,000	1,000	1,000	3,000(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4,000	2,000	7,000(70%)

자료 : 대통령경호처

2024년도 예산안 편성을 거치면서 사업 총 규모는 동일하되, 대통령 경호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담 비율이 종전 3:7에서 5:5로, 사업 기간이 종전 3개년에서 5개년으로 변경되었음.

[변경 - 연도별 AI X-Ray 개발사업 소요예산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비율)
대통령경호처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500	1,500	1,500	500	5,000(50%)

자료 : 대통령경호처

이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기관 간 예산 분담비율이 변경(3:7 ⇒ 5:5)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분담금 감소분이 대통령경호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이 줄어들어 총 사업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으므로, 남은 3개년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 집중 투입에 따른 사업 기간의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단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동 R&D 사업은 총 100억원에 달하는 상당 규모의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AI 위험물 탐색 시스템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6

